



## 「KEB하나 국민연금 안심통장 특약」(구 외환은행)

### 제1조 적용범위

이 특약은 고객과 (주)하나은행 (이하 "은행" 이라고 한다)과의 "KEB하나 국민연금 안심통장(구 외환은행)"(이하 "이 예금" 이라 함)거래에 적용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및 「예금거래기본약관」을 적용합니다.

### 제2조 예금과목

이 예금의 예금과목은 저축예금으로 합니다.

### 제3조 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으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고객으로 합니다.

### 제4조 입금제한

- ① 이 예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입금하는 국민연금 급여로 입금자원이 제한되며, 국민연금 급여 이외의 자금은 입금할 수 없습니다.
- ② 이 예금은 국민연금 수령액으로 국민연금법 제54조의 2, 제58조, 동법 시행령 제44조,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이하 "관련법"이라 함)에서 정하는 국민연금 수급권자 보호금액 (이하 "보호금액"이라 함) 까지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단, 예금의 잔액은 금액에 제한없이 유지가 가능하며 입금 제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③ 매월 수령하는 국민연금 급여액이 동조 제2항의 보호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호금액까지만 이 예금으로 입금되므로 보호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입금이 제한되지 않는 별도의 통장으로 수령해야 합니다.

### 제5조 거래제한

- ① 이 예금은 관련법에 따라 입금된 예금과 이에 관한 채권을 압류할 수 없고, 압류에 의한 지급제한이 되지 않습니다.
- ② 이 예금은 은행이 상계할 수 없습니다.
- ③ 이 예금은 양도 및 담보제공 할 수 없습니다.
- ④ 이 예금은 통장대출계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⑤ 이 예금을 신용카드 결제계좌나 공과금 등 대금납부 목적의 계좌로 지정한 경우, 결제,납부금액이 부족하거나 결제,납부취소 등이 발생한 때에는 제4조에 따라 고객이 영업점 창구에서 결제,납부금액을 직접 납부하거나 별도 지정계좌로 입금 또는 직접 수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제6조 이율적용

- ① 이 예금은 신규일 당일 영업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저축예금 금리가 적용됩니다.
- ② 이자는 매년 3, 6, 9, 12월 제 3의 금요일의 다음날(원가일)에 원금에 더합니다.
- ③ 이자계산은 최초 예금일(또는 지난 원가일)로부터 원가일 전일까지를 이자계산 기간으로 하고, 매일의 최종 잔액에 대하여 매영업일에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이율로 이자를 계산합니다.
- ④ 이 예금의 적용 이율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율 변경 시에는 변경일로부터 바뀐 이자가 적용됩니다.

## 제7조 우대 서비스

- ① 이 예금으로 매월 말일자 기준으로 당월에 국민연금 급여 입금실적이 있는 경우, 익월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간 이 예금을 통한 거래에 대하여 아래의 거래에 대하여 우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모바일뱅킹, 스마트폰뱅킹을 이용하여 다른 은행으로 이체시 수수료 면제
  2. KEB하나은행 CD/ATM 이용수수료 면제
    - CD/ATM을 이용하여 KEB하나은행 계좌로 마감후 이체 및 마감후 인출 시 수수료 면제.  
단, 다른 은행으로 이체시 수수료 면제 불가
- ② 우대서비스 특례
  - 최초 가입 후 다음달말까지는 제공조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우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부칙(제정)

이 특약은 2013년 2 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1)

이 특약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2)

이 특약은 기존 가입자 포함 2016년 6월 7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